

심사 규정 (Review Principles)

제정 1987.1.1
개정 2018.7.1
2019.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심사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KJIOP)」(이하 학회지)에 우수 논문 게재를 위한 적합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공정한 논문심사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제3조(심사방식)

- ① 본 학회지의 모든 논문심사는 저자정보를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중맹검 동료 심사(Double-Blinded peer review)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 ② 예비심사: 논문 투고 후, 투고논문의 적격성(학회지의 목적과 원고유형(투고 규정 제2장3조)에 부합 여부를 본심사 전에 필요 시 심사기준을 토대로 2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배정하여 심사진행 여부 결정에 대해 평가
- ③ 본심사: 예비심사 후,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주제 및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분과 편집위원을 통해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 진행

제4조(심사위원 구성)

- ① 논문 투고 후,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전문성(주제, 연구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배정하고 해당 편집위원에게 논문평가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기고할 경우 편집위원 중, 한 명이 편집위원장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을 주관한다. 해당 인원은 편집위원 경력·연구경력 순으로 추천하여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③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경과한 자를 우선 추천한다.
- ④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그 외에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논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심사위원 역할을 선택하여 심사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절차 지침

제5조(심사내용)

- ① 예비심사: 논문 투고 후, 투고논문의 적격성(학회지의 목적과 원고유형(투고 규정 제2장3조)에 부합 여부를 본심사 전에 판단하여 심사진행 여부 결정)
- ② 본심사
 - 가) 논문 투고 후,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적격성(학회지의 목적과 원고유형(투고 규정 제2장3조)에 부합 여부를 본심사 전에 판단하여 심사진행 여부 결정) 심사를 위한 3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7일 이내에 선정하고 14일 이내로 주관의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 나) 심사위원 추천요청: 예비심사 후, 편집위원장은 7일 이내로 3명 이상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요청을 진행한다.
 - 다) 최종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들은 익명으로 된 논문에 대해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논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최종 심사위원으로 결정한다.

제6조(심사진행)

- ① 논문의 접수와 예비심사
 - 가) 모든 논문심사는 수시 접수 후, 수시 심사를 원칙으로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 나)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안내를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에 사전광고하며, 한국심리학회,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및 학술지(<https://journal.ksiop.or.kr>), 학회 홈페이지(<https://www.ksiop.or.kr>)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다.
 - 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분야 및 방법별로 분류하고 학회지의 목적과 연구범위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여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한다.
 - 라) 예비 적격성 심사는 학회지의 목적과 연구범위에 대한 부합 여부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며, 편집위원 3인 이상을 선정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여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마) 본심사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의뢰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이 연구의 전문성 부분에게 부적합하거나 심사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편집위원에게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사의뢰 및 논문 발송
 - 가) 초기 심사의뢰는 1주일 이내에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개별 E-mail로 요청하여 배정한다.
 - 나) 심사대상 논문에서 저자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삭제 또는 재투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한다.
- ③ 심사의견 및 심사결정 제출
 - 가) 심사위원의 심사기간은 제 1차 심사의 경우에 3주일 이내(20일 내외), 재심사 이상의 경우에 1주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심사위원은 심사결과가 「① 게재가능」 또는 「④ 게재거절」인 경우에도 심사보고서에 '심사기준' 항목에 따라 해당 심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심사결과의 통보
 - 가)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심사결정이 완료 후, 투고자에게 심사의견 전달여부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심사단계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초기 정해진 심사기간 초과 시 심사위원에게 신속한 제출을 요청하여 전체 심사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 나) 심사진행 및 결과통보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 ⑤ 투고자의 답변서 및 수정본 송부

- 가)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본은 심사위원 전원의 수정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서는 심사위원 각각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 다) 답변서 및 수정본의 제출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⑥ 학술지 게재

- 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확정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KJIOP)」에 게재하며, 게재순서는 확정일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게재될 논문들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 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연구주제의 공통성 등을 감안하여 가), 나)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심사방법 및 최종판정 기준

제7조(심사방법) 심사는 각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항목 평가(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와 최종결정으로 진행되며 **심사항목 평가**와 **최종결정**을 통합하여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이 결정된다.

① 심사항목 평가

가) 심사규정의 심사항목(제4장8조)을 기준으로 투고규정의 원고구성 및 작성(제3장8조)에 명시된 본문(서론, 문헌고찰,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 시사점), 초록 등에 대해 투고논문의 학술적 발전과 연구 성과물의 가치 확산 차원에서 항목별 심사의견(수정·보완)을 제시하는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다.

1. 서론(Introduction): 연구배경과 목적 간의 연관성, 연구 중요성 제시
2.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 Key paper 고찰 여부, 최근 연구동향 검토
3. 연구방법(Methods):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절차 고려(타당성, 신뢰성 확보)
4. 연구결과/통계(Results):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 통계값에 대한 세부설명
5. 연구 시사점(Implication):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활용 시사점 제시 여부
6. 투고규정에 따른 원고형식 준수(Formating): 국문영문 초록, 참고문헌 형식, 목차 구성

나) 심사항목별로 연구논문의 중요성·창의성·타당성·완결성·적절성 등에 대해 항목별 개별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를 진행한다.

② 최종결정(final decision)은 (1) 심사항목 평가를 토대로 게재 또는 추가 심사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총 4단계(게재가능-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거절)와 예비 적격성 심사로 판정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심사항목 평가) 다음 심사항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다.

①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의 의견 제시

- 가) 서론(Introduction): 연구배경과 목적 간의 연관성, 연구 중요성 제시
- 나)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 Key paper 고찰 여부, 최근 연구동향 검토
- 다) 연구방법(Methods):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절차 고려(타당성, 신뢰성 확보)
- 라) 연구결과/통계(Results):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 통계값에 대한 세부설명
- 마) 연구 시사점(Implication):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활용 시사점 제시 여부
- 바) 투고규정에 따른 원고형식 준수(Formating): 국문영문 초록, 참고문헌 형식, 목차 구성
- 사) 심사총평 및 수정요청사항은 1) ~ 6) 항목별로 수정·보완할 사항을 기재한다.

② 정량적 평가: 심사위원의 심사항목 점수 부여

<평가 점수표> 평가 점수 부여(0-4점)

심사항목	매우미흡 Inadequate	미흡 Weak	보통 Modest	우수 Strong	매우우수 Very Strong
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논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이론적·실무적·정책적 기여					

주. 매우미흡(0점)-미흡(1점)-보통(2점)-우수(3점)-매우우수(4점)

제8조(심사위원의 최종결정) 심사위원은 심사항목(제7조)의 세부평가를 토대로 최종결과를 판정한다.

① 심사결정은 다음 5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가) ①게재가능: 편집위원/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처리

나) ②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수정반영 후, 심사위원의 추가 심사 후 게재 가능

다) ③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수정반영 후, 재투고를 통해 재심사 진행

라) ④게재거절

② 예비 적격성 심사

가) 예비 적격성 적합

1. 편집위원 3인이 본심사의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심사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적합 판단

나) 예비 적격성 부적합: 투고논문의 적격성(학회지의 목적과 원고유형(논문 투고 규정 제2장4조) 기준에 부적합

1. 학회지 논문 게재율 산출 시, ④게재거절 논문으로 처리하며, 예비 적격성 부적합 결정이 높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적격성 기준을 재검토 및 투고 지침에 대한 설명에 명기한다.

	심사결정(국문)	심사결정(영문)	심사결정 해석	최종 심사결정 처리
①	게재가능	Accept Submission	무수정 또는 수정확인 후 게재가능	편집위원/편집위원장
②	수정 후 게재	Revision Required	저자의 심사내용 반영 후 추가 (2차, 3차) 평가 후, 게재가능 결정	심사위원
③	수정 후 재심	Resubmit for Review	저자의 심사내용 반영 및 재투고 후, 심사단계 진행 여부 결정	기존 심사위원 유지 (필요시, 재배정)
④	게재거절	Decline Submission	다음 심사단계 진행 없이 종료	
	예비 적격성 부적합	Resubmit elsewhere	심사위원(편집위원 구성) 적격성 기준 미충족	편집위원(3명 이상)

제9조(종합판정)

① 심사결과의 종합판정은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항목 평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 평가와 최종결정 (final decision)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② 심사의 종합판정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심사결정	심사단계 진행	
A	B	C			
①	①	①	게재가능	편집위원/편집위원장 논의를 통해 수정범위 결정 후, 저자에게 최종 원고 수정 요청	
		②			
	②	②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수정/보완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완 요청	
		③			
③	③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수정/보강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강 후, 재투고 단계 진행		
	④				
④	④	게재거절	게재거절 통보		
②	②	②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수정/보완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완 요청	
		③			
		④			
	③	③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수정/보강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강 후, 재투고 단계 진행	
④					
④	④	게재거절	게재거절 통보		
③	③	③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수정/보강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강 후, 재투고 단계 진행	
		④			
④	④	게재거절	게재거절 통보		
④	④	④	게재거절	게재거절 통보	

예비 적격성 심사 판정

①	①	①	예비 적격성 부합	3명의 심사위원(편집위원) 배정 후, 적격성 판정	심사위원 추천 및 배정 요청 후, 1차 심사단계 진행
		②			
		③			
		④			
②	②	②	예비 적격성 부적합	3명의 심사위원(편집위원) 부적합 사유 및 판정결과 논의 후 최종결정	예비 적격성 부적합으로 심사종료
		③			
		④			
③	③	③	예비 적격성 부적합	3명의 심사위원(편집위원) 부적합 사유 및 판정결과 논의 후 최종결정	예비 적격성 부적합으로 심사종료
④	④				
④	④	④			

주: A, B, C는 각각 제 1심사위원, 제 2심사위원, 제 3심사위원

제9조(심사결과 운영지침)

① 「제 3심사위원」의 선정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반하여 선정한다.

- 가) 1차 심사기간 만료일 후 독촉연락을 2회 이상 행한 이후에도 심사자의 명시적 응답이 없거나, 심사자로부터 심사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나) 최종 결과는 심사위원 3인의 의견 중 다수(2인)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② 심사종료 및 게재거절

- 가)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고자의 경우에, 해당 논문을 “심사종료” 하거나 “게재거절”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자가 암묵적으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 1. 수정요청이 투고자에게 도달한 후 수정만료일 익일부터 3개월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 경우(단, 저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2. 편집위원의 최초 독촉연락이 도달한 익일부터 60일까지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
 3. 편집위원회가 독촉연락을 최소 30일을 주기로 2회 이상 행한 이후에도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
- 나) 투고 저자의 응답 여부기준은 온라인 시스템 상에 초기 요청통보(시스템의 e-mail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심사자 간 의견불일치 논문의 처리원칙
- 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 나)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 3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
- 1)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판정에 대해 반론이나 상이한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E-mail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에 대한 논거나 실증적인 반론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이의신청 심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하여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회의 결과내용을 전달한다.
- ⑤ 투고 논문이 논문작성 규정에 위배될 경우, 추후에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98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된다.

부칙 <2018.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된다.

부칙 <2019.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발령한 날로부터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